

5 창업교육센터 규정

제정 2012. 9. 3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센터는 창업교육 강화,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대학의 창업교육을 총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소재) 명칭은 창업교육센터로 하며 호서대학교 인재개발처 내에 둔다.(개정 2016. 2. 29, 2017. 8. 24)

제3조(사업내용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창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대학 전체 또는 단과대학, 전공별로 시행되고 있는 창업교육의 통합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대학 내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
4. 대학 내 관계 부서와의 협력·연계에 관한 사항
5. 대학 내 학생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각종 행사 및 연구 활동의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대학과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 2 장 조직 및 구성

제4조(조직) 센터는 각종 위원회와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.

- ① 창업교육 운영위원회
- ② 자문위원회

제5조(구성) 센터는 아래와 같은 구성원을 둘 수 있다.

- ① 센터장 1명
- ② 부센터장 1명
- ③ 팀장 1명
- ④ 전담 행정직원 약간명

제6조(센터장)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대학 전반의 창업에 대한 관심제고 및 창업 강좌 학점인정 연계 등을 위해 교무처 등 대학 내 관계 부서장과 협의 가능한 위상을 부여한다.

제 3 장 창업교육 운영위원회

제7조(구성)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, 대학의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, 공대학장, 경영대학원장, 창업교육센터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.

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한다. 기타 위원은 학, 내외 전문 인사 중에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조정한다.

1. 연도별 창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창업교육 강화,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·변경에 관한 사항
3. 대학내 창업교육 관련 업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창업교육 활용에 관한 사항
5. 기타 창업교육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 4 장 재 정

제9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정부·지방자치단체,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지원금,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,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제 5 장 보 칙

제10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대학의 ‘규정 등 관리 운영규정’의 절차에 따라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1조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 이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